

(특허청)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소관 : 산업재산조사과]

제정 2017. 8. 31. 특허청 훈령 제890호

개정 2019. 10. 17. 특허청 훈령 제95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상표권·특허권·영업비밀·디자인권·부정경쟁행위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산업재산 특사경’이라 한다)또는 부정경쟁행위 조사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기준과 산업재산 특사경 지역사무소에 일시 대기 중인 자와 일시 보호 중인 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고인 등"은 산업재산 특사경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또는 조사관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으로서 피의자(피진정인, 피내사자, 일시 대기 중인 자, 일시 보호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제3자와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2. "일시 대기 중인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 영장발부 후 경찰관서에 입감 전 피의자, 입감 후 여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 및 범죄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일시 대기 중인 자 등을 말한다.
3. "일시 보호 중인 자"는 산업재산 특사경 지역사무소에 일시적으로 보호 조치된 유아, 병자 또는 부상자 등을 말한다.

4. "급식비"는 피의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비용을 말한다.

제3조(비용지급 범위) 이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산업재산 특사경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식비
2. 산업재산 특사경 또는 조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운임, 식비, 숙박비 및 일비
3. 산업재산 특사경 또는 조사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

제4조(비용 지급 기준) ① 참고인 등의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② 감정료 및 통역료는 산업재산조사과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 및 통역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번역료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피의자 급식비, 참고인 경비,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생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비용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비용 청구 및 지급 방법) ① 참고인 등은 제3조에 따른 비용을 그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참고인 등의 비용은 진술이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종료하고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산업재산조사과장은 피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때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관서운영경비 운영부서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④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참고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한 때 "참고인 등 비용지급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관서운영경비 운영부서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⑤ 참고인 등의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54호, 2019. 10. 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인 등 비용지급 관리대장

연번	조사 일시	사건 번호	업체명	위반법령	참고인 등 인적 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